

전북지사 임시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

우리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간제 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2년 4월 28일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

1. 채용내용

- 고용형태 : 기간제계약직
- 계약기간 : 2022년 6월 2일(목) ~ 2022년 12월 31일(토)
- 보수수준 : 2,400,000원/월 (원천세 및 4대보험 등 공제 전)
* 복리후생비, 경영평가성과급 등 포함
- 근무시간 : 주5일, 8시간/일 (사업·종업,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함)
- 담당업무, 채용인원 및 근무지

분야	담당업무	채용인원	근무지
기술	경상정비 및 관로검사 보조업무	4명	전북 군산시, 충남 홍성군 (사택 미제공)

- 주) 1.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닙니다.
2. 채용관련 문의는 담당자(063-850-3928, 213067@kogastech.or.kr)로 연락바랍니다.

2.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구 분	요 건
지원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○ 우리공사 「인사규정」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사유가 없는 자○ 성별, 연령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(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) (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)
우 대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국가기술자격증* 기능사 이상 소지자 * 아래 「인정 국가기술자격증 현황」 참조○ 관련분야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* 경력증명서제출(4대보험 완납증명서 포함)○ 전라북도 거주자, 충청남도 거주자(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) * 사택 미제공
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

	대상자(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) (단,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) 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장애인등록자(전형단계별 만점의 5%) *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* 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
--	--

<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현황 >

인정자격증	비고
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의 기계, 재료, 화학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건설(토목,건축),환경·에너지 분야	최고 등급 1건 인정

3. 전형절차 및 일정

□ 전형절차

- 1차 전형(서류전형) : 입사지원서 및 우대요건 평가
 - 동점자 처리기준 :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
- 2차 전형(면접전형) : 직무수행능력, 관련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 응답(인성 및 자질평가)
-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점수 6할 이상인자 중 서류전형(30%), 면접전형(70%) 합산 고득점자
 - 동점자 처리기준 : 1순위(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), 2순위(장애인등록자), 3순위(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), 4순위(서류전형 고득점자)

□ 전형일정

구 분	일정	내용
원서접수	2022.04.28(목) ~ 2022.05.12(목) ※ 15일 이상	○ 접수방법 : 입사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○ 접 수 처 : https://kogastech.recruiter.co.kr ○ 접수마감 : 2022.05.12(목) 16시까지 ※ 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
서류전형	2022.05.17(화) ※합격자발표 : 5.18(수)	○ 응시자 입사지원서 평가 ○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확인
면접전형	2022.05.23(월)	○ 장소 :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(전북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12) ○ 면접전형 : 실무지식 및 경험, 자질, 인성 등 검증
최종합격자 발표	2022.05.26(목)	○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확인 ○ 2022.06.02(목)부터 근무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4. 제출서류

구비서류	제출시기
○(공통)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	원서접수 시
○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
○(공통)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면허경력증명서 각 1부	면접일 ※미제출시 면접응시 불가
○(공통) 주민등록초본(군경력 기재) 및 등본 각 1부(생년월일만 표시) -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-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반드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발급	
○(해당자) 경력증명서(담당업무기재)[4대보험 완납증명서 포함]	
○(해당자) 자격증 사본 1부(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포함)	
○(해당자) 취업지원(보훈)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증 서류 1부	

□ 유의사항

-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
-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입사일 등 날짜가 정확히 표기된 것에 한함
- 자격증 등 제출서류 등은 발급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입사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5. 기타사항

-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거나(기재착오, 누락, 입력조건을 채우기 위한 글자의 반복입력 등), 온라인 제출자료 누락,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응시원서의 성실 기재 및 합격자 발표일 등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합격 및 채용 취소
 - 최종 합격자 결정 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우리공사 입사를 제한합니다.(접수된 서류 미반환)
 -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부터 임용 후 1개월까지 해당 채용에서 임용 포기, 취소 등으로 당초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을 충원
 -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거나 입사후 파면·해임 또는 직권면직된 직원이

발생할 경우 전형절차별 예비순위 해당자를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

-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 사유확인서 징구

□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
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할 예정입니다.
 - (반환청구방법) 본인이 신청한 「채용서류반환청구서」에 의함
 - (보관기간) 임용일로부터 90일
 - (개인정보보호)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
 - (반환방법)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
 - (반환의무 예외)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

□ 이의신청 접수 :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

- 방 법 : 한국가스기술공사 전북지사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및 접수
(213067@kogastech.or.kr / 063-850-3928)
- 신청기한
 - 서류전형 불합격자 :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익일까지
 - 면접전형 불합격자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
- 이의신청 처리대상 :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: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
6. 참고자료

□ 인사규정 제5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
9.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2022. 04. 28

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